

	국제교류원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4. 3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국제교류원

제1조(목적) 외국과의 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국제교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원(이하"교류원"이라 하다))이라 한다.

제3조(업무) 교류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모집 계획 수립
2.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모집 및 관리
3. 어학연수생 유치 및 관리
4. 유학생(어학연수생 포함) 유치관련 외국대학과의 협력 및 교류
5. 교수, 학생교류 및 교직원 해외연수에 관한 업무
 - 가. 대학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 - 나. 교직원 해외연수 참가자는 연수일을 기준으로 5년 근속자를 최우선으로 한다.
 - 다. 대학에 공헌한 자를 총장 및 원장의 추천에 의해 포함시킬 수 있다.
 - 라. 대학의 모든 해외연수의 제반사항을 교류원에서 수립하고 진행한다.
6. 기타 교류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4조(조직) ①교류원에는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류원을 대표하며,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교류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교류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교류원에는 운영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일반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- ⑤해외에는 학생모집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, 지역별 약간 명의 유학생 모집관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교류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- ②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새로이 변경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④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.
-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가. 교류원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
- 나. 교류원의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
- 다. 교류원 규정의 제·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
- 라. 교류원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마. 교류원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
- 바. 간행물 출판에 관한 사항
- 사. 기타 교류원 운영에 관한 사항

제6조(자문위원) 원장은 교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위
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세칙) 기타 교류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
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